

안전번호	제25-1호 (제447차 이사회)
보고년월일	2025. 2. 14.

보  
고  
사  
항

전차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

제 출 자	주 택 도 시 보 증 공 사 기획조정실장 김 용 한
제출년월일	2025. 2. 14.

# 1. 제445차 이사회 개최결과

가. 회의일시 : 2024. 12. 27.(금) 11:00

나. 회의장소 : 여의도 태흥빌딩 7층 1회의실

다. 참여현황 : 이사 12명 중 11명 참석

라. 회의결과 : 보고사항 1건 원안접수, 의결사항 9건 원안의결

구분	안건번호	안건명	회의결과
보고사항	제24-17호	전차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	원안접수
의결사항	제24-70호	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	원안의결
	제24-71호	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	제24-72호	이사회운영기준 개정안	원안의결
	제24-73호	2024년도 연봉제직원 보수결정안	원안의결
	제24-74호	2024년도 직원 보수결정안	원안의결
	제24-75호	2024년도 경영지원직원 보수결정안	원안의결
	제24-76호	2025년도 연간자금계획안	원안의결
	제24-77호	2025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안	원안의결
	제24-78호	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
## 마. 주요 경영제언 및 조치현황

제언사항	조치현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콜센터 상담에 대해 효율적인 AI기능 개발 요청 [국경복 이사]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AI기반 음성봇 기능을 포함한 미래형 콜센터 시스템 도입 완료 ('25.2.3.)</li> <li>○ 상담고객별 추천 서비스 제공 기능 추가 적용 예정('25.3월 중)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챗봇을 통한 민원응대가 오히려 기관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, 설문조사 등을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[심오택 이사]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25년 안심전세 APP 고도화 사업 추진 시 챗봇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민원 내용 파악 및 개선 예정</li> </ul>

제언사항	조치현황
○ 불법추심 방지 방안 검토 요청 [김성수 이사]	○ 공사는 채권추심 위임업체 pool을 구성('24.3분기) - 불법추심 발생 시,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 해지 등 제재 ○ '25년 3분기 內 채권추심업체 협약 갱신 시, 관련 점검 강화
○ 인사발령 후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 요청 [김태우 이사]	○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'부서별 조치사항 및 영업부서 신설 가이드라인' 수립·시행('25.1.3.)

## 2. 제446차 이사회 개최결과

가. 회의일자 : 2025. 1. 23.(목)

나. 회의방법 : 서면결의

다. 참여현황 : 이사 총 12명 중 11명 서명하여 적법하게 결의됨

라. 회의결과 : 의결사항 2건 원안의결

구분	안건번호	안건명	회의결과
의결사항	제25-1호	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안	심오택, 국경복, 최홍재, 채상미, 김선주, 이은경, 김성규 위원 선임
	제25-2호	전세보증금반환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및 규정 : 별첨

나. 조치사항 : 이사회 회의록 및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공시  
(공사 홈페이지 및 통합공시시스템)

## 【별첨】

# 관련 법령 및 규정

### □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

제61조(이사회 회의록 작성) ①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, 장소, 참석자 명단,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내용,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의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

### □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

제34조(이사회 회의록 공개) 공공기관 이사회 회의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체 홈페이지와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최소화하고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### □ 이사회규정

제8조 (의결 및 보고사항) ① ~ ③ (생략)

④ 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국정감사,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회계 감사와 동법률 제52조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
2.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(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한다)
3.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의 업무수행실적
4.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나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